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86309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곽윤희, 김정대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6.

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망 E(1999. 6.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8. 20. 망 F과 혼인하여 1950년 망 G를 출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망 F이 사망하였다.

나. 이후 망인은 망 H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원고 A(I생), 원고 B(J생)을 낳았다.다. 한편, 피고들은 망 G와 망 K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라. 망인은 그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이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24. 상속을 원인으로 2021. 6. 3.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8의 각 기재,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들 상속분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정현

별지